

**환 경 부
보도자료**

- '05. 5. 배포
- 사진 없음
- 총 5쪽

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	김성동 과 장 이윤택 사무관	전화 (메일)	02-2110-6789 lyt0905@me.go.kr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환경부, 굴뚝 TMS 부착 대상시설 확대

TMS	19	39
-	2007	6

-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(TMS : Smokestack Tele-Monitoring System)에 대한 그동안 성과 분석을 토대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**부착대상 시설을 확대**하는 한편 TMS부착 사업장에 대한 **행정처분기준은 대폭 완화**하는 것을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.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은
 - 그동안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TMS 부착 대상시설 및 측정항목을 법률상 규정으로 상향조정하고, 유리·화학비료 제조시설에 먼지, 황산화물을 부착대상 항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19개시설에서 39개시설로 확대하였으며.
 - 이에따라 '07년6월 이후 전국의 1~3종 대기배출사업장 5,145개 중 9.2%에 해당되는 472개 사업장('05.3월 현재 317개 사업장)에 TMS를 부착하게 된다.

- 한편,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폐쇄예정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측정기기 부착을 면제하도록 하고,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개선계획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은

- 행정처분 경감기준을 현행 “경감할 수 있다”라고 되어 있는 것을 “조업정지·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” 라고 명확히 하였으며, 자가측정에 대하여도 먼지만 배출하는 시설일 경우 매주 1회 또는 월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반기 1회로 대폭 완화하였으며,
- TMS를 부착한 사업장의 경우 30분 단위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가 결정되어 배출허용기준 초과누적으로 인한 조업정지, 허가 취소 및 폐쇄처분을 **개선명령**으로 완화하였으며, 온도측정기의 교정주기에 대해서도 연1회 이상에서 신규설치 또는 교체시에만 교정토록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였다.

□ 이번 TMS 부착대상시설 확대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, 질소산화물, 먼지의 경우 연간 전체 사업장 총 배출량 **696,095톤** 중 **89%** 가량인 **619,559톤**[황산화물 345,058/313,437(91%), 질소산화물 316,399/290,511(92%), 먼지 34,638/15,611(45%)]을 TMS로 자동 감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,

- 이에따라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지도방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TMS를 통한 정확한 자료관리로 수도권 대기질 총량규제 등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대기환경보전 정책을 구현할수 있는 사업장 대기관리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.

-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TMS 자료를 개선명령,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, 사업장에서도 TMS 운영이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횟수가 감소되고 이에따라 배출부과금 부담도 감소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.

<연도별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현황>

구 분	2002	2003	감소율(%)
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	8,747건	4,622건	47.2
초과배출 부과금	104,588천원	60,326천원	42.4

<참고자료>

- 붙임 : 1.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확대내역
- 2.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체계 관련 외국사례와 비교

<붙임 1>

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확대내역

구분	기존시설	확대시설
계	19개 시설	39개시설
부착대상 시설	1. 일반 보일러 2.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3. 기체연료 사용발전시설 4. 지정폐기물 이외의 소각시설 5.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6. 황산제조시설 7. 비철금속제련시설 8. 석유정제시설 중 가열시설 9. 탈황(황회수시설)시설 10. 염산제조시설 11. 질소질비료 제조시설 12. 암모니아 합성시설 13. 인산제조시설 14. 인광석 소성시설 15. 불산제조(복합비료제조)시설 16. 질산제조시설 17. 전기아크로 18.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19. 유리제품 용융·용해시설	1~19. 동일 20. 소결로 21. 가열로(금속용융 및 열처리) 22. 용광·용선·배소로 23. 산처리시설(염산사용시설) 24. 주물사처리시설 25. 코크스제조시설(화학) 26. 카바이트제조 전기로 27. 용융·소성 또는 가열시설(화학) 28. 촉매재생시설 29. 중질유 분해시설 30. 코크스 또는 관련제품 제조시설 31. 시멘트제조시설 중 냉각시설 32. 석회 소성로 33. 석고 소성·건조로 34. 광물섬유제조 용융로 35. 폐가스 소각시설 36.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37. 탈사시설 38. 폐수소각(증발) 시설 39. 가열시설(기타 간접가열)

<붙임 2>

굴뚝TMS 운영체제 관련 외국사례와의 비교

□ 우리나라 굴뚝TMS의 우수성

- 사업장 관리의 광역화 가능(전국관리 가능)
 - IT산업 발달 및 무선통신방식 채택으로 전국관리 가능
- 사업장 측정기기 운영관리 방식의 우수성
 - 사업장 측정기기의 운영상태를 원격제어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
- 인터넷 지원시스템(대민지원시스템) 운영
 - 사업장에서 측정·전송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등의 자료를 인터넷 상으로 상시 제공
 -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련사항,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 운영관련 사항에 대한 사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토록 행정절차 간소화
-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
 - 배출허용기준 초과하기 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ARS 주의보 신호 전송
 - 배출량 및 부과금을 자동산정하여 자료제공

□ 우리나라 굴뚝TMS의 개선점

- 측정기기 개발 및 운영기술 향상 필요
 -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개발 및 운영기술의 향상이 요구됨.
 - 국내 설치된 대부분의 측정기기는 외산으로 국산화율이 저조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필요
- 세부적인 제도적 보완 필요
 -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등 세부운영관리 기준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